

부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가단3049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9,754,761원 및 그 중 69,754,567원에 대하여 2022. 9. 7.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2.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68,73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68,7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김도균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통영시 C에 있는

D맨션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E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통영시 C 대 1453.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F호 철근콘크리트조 80.8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453600분의 28801 -끝-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신용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정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금융기관이고, 피고 A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A의 의뢰에 따라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그 보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1,2,3,4호 증의 1 각 신용보증서, 1,2,3,4호증의 2 각 신용보증약정서 각 참조).

[금액단위 : 원]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과목	대출기관
2021. 3. 12.	G	30,000,000	일반자금	H은행
2021. 8. 26.	I	20,000,000	일반자금	L은행
2022. 2. 7.	J	10,000,000	특 ^K 례보증	
2021. 6. 23.	M	10,000,000	일반자금	

2.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가.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용보증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후, 2022. 4. 26.경 신용보증사고를 내었고, 원고는 H은행과 L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22. 9. 7.경 그 동안 피고 A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70,774,017원(30,330,632원+20,304,886원+10,041,470원+10,097,029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제6호증의 1 내지 4 각 대위변제증서 각 참조).

(2)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및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약정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연 7%입니다(갑 제7호증 손해금율변경 각 참조).

나. 확정손해금 및 구상금채권 잔액

원고는 위 대위변제 이후 1,019,450원을 회수하여 전체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대위변제잔액은 69,754,567원이 남게 되었으나,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94원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A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각 채권현황, 8호증의 5 구상채권원장, 8호증의 6 구상채권현황 각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총대위변제잔액 69,754,567원과 확정지연손해금 194원의 합계 69,754,761원 및 그 중 총대위변제잔액 69,754,567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입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22. 3. 4.경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같은 달 16. 접수 제42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갑 제9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하지만 피고 A은 이 사건 피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그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구상금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로부터의 채권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였는 바, 피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을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나. 원고의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발생하였으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피고 A과 원고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채권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기존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사해부동산의 가액상당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30,000,000원(거래가액 기준)원에서 말소된 위 5번 근저당권부채권 61,263,000원을 공제한 68,73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갑 제9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제10호증 신용정보조회서 각 참조).

4.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한

피고 A은 원고에게 총대위변제잔액 69,754,567원과 확정지연손해금 194원의 합계 69,754,761원 및 그 중 총대위변제잔액 69,754,567원에 대하여 원고가 H은행과 L은행에 각 대위변제한 날인 2022.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4.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써 68,73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68,7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